

강력한 자외선의 침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지구 생명체들에 들연변이를 일으키게 하고 먹이사슬에도 작용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시키기도 할 것이다.

둘째는 인류의 후손들이 쾌적하게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오늘의 환경문제가 자원의 지나친 소비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자원절약을 위한 오늘의 환경보전은 당연히 우리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연료자원으로 계속 태워 없어지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자원은 수만년간 지구가 축적해 온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이것을 오늘의 세대만이 잘살겠다고 마구 써버리는 것은 후손에 대한 죄악임이 분명하다.

II. 국제환경협약의 내용과 의미

환경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이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도 현재 약 150개에 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의 보전, 위험물질의 운송, 생산공정, 거래규제, 자연 및 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보호, 작업환경보호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최근 몬트리올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의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받게 될 피해를 막고 국가간의 오존층 파괴를 감시하자는 취지의 바탕아래 1987년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궁극적인 제거에 필요한 조치는 의정서를 통하여 설정한다는 비엔나협약의 위임조치에 의거하여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가 채택되어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수는 71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이 동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 할론 등 물질사용량은 전세계소비량의 92%를 점하고 있다. 그후 1990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2차 가입국회의에서는 대상물질의 수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27일자로 그 의정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생산, 소비, 교역을 규제하고 있는 대상물질은 15종의 CFC물질과 3종의 할론, 4염화탄소 및 3염화에탄 등 총 20종이며(표 참조) 이들은 당초 의정서의 8종의 물질과 런던 2차 가입국회에서 추가된 12종의 물질로 구분된다.

〈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내용

규제물질	규제 내용
CFC	〈소비량〉
CFC-11	○ 1989.7 : 1986실적
CFC-12	○ 1995.1 : 1986실적 X50%
CFC-113	○ 1997.1 : 1986실적 X15%
CFC-114	○ 2001.1 : 사용금지
CFC-115	- 단, 2조6항 적용시 1986년 실적을 0.5kg으로 산정함 〈생산량〉 ○ 상동 ○ 단, 2조6항 적용시 1986년 실적을 0.57kg/인오로 추정됨 (1986년 생산실적+건설중인 설비능력)
Halon	〈소비량 및 생산량〉
Halon-1301	○ 1992.1 : 1986실적
Halon-1211	○ 1995.1 : 1986실적 X50%
Halon-2402	○ 2000.1 : 사용금지 - 단, 2조6항 적용시 CFC와 합산후 동일기준 적용 - 1995년부터 필수요소본(Essential Use)은 제외 - 필수요소본의 정의는 추후 결정
기타 CFC	○ 1993.1 : 1989실적
CFC-13, 111, 112	○ 1997.1 : 1989실적 X50%
CFC-211~217(10개)	○ 2000.1 : 사용금지
사염화탄소(CCl ₄)	○ 기타 CFC의 경우와 동일
메틸클로로포름(CH ₂ Cl ₂)	○ 1993.1 : 1989실적 ○ 1995.1 : 1989실적 X70% ○ 2000.1 : 1989실적 X30% ○ 2005.1 : 사용금지

주: 모든실적은 CFC-11 값을 1.0으로 한 ODP(Ozone Depletion Potential, 오존 파괴지수)환산량임.

자료: 김준한, 지구환경문제의 통상질서, 1992.5, p.23.

